

(통권 21-1호)

# 예산·재정정책 정보

본 보고서는 충청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최근 국내연구기관 등의 경제동향, 국가 및 지방재정 연구동향 및 법령 제·개정 사항 등을 파악하여 요약·정리한 자료입니다.

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,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첨부된 원문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(Tel : 635-5205)

2021. 3. 19



**충청남도의회사무처**  
(예산정책담당관)

| 분 야 별 목 차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분 야         | 제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|
| I. 경제       | 1. KDI 경제동향(2021.3)              | 1   |
| II. 재정      | 2.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    | 2   |
|             | 3.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: 탄소인지예산          | 3   |
| III. 정책     | 4.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     | 4   |
|             | 5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변화        | 5   |
|             | 6.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의 탐색적 논의  | 6   |
| IV. 법률 제·개정 | 7.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갑의원 등 10인) | 7   |
|             | 8.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의원 등 23인)    | 8   |

## 1. KDI 경제동향(2021. 3)

-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상품수요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,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고용이 급격히 위축되는 등 경기부진이 지속되고 있음
- 내구재 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경기위축을 방어하고 있는 가운데, 경기 관련 심리지표도 개선됨
  - 승용차와 가전제품을 중심으로 내구재 판매가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며,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른 소비 부진을 일부 완화함.
  - 수출과 설비투자도 대외 상품수요가 회복되면서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대폭 증가함
  - 아울러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됨.
-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빠르게 위축되는 등 경기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
  - 서비스업 생산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에 따라 전월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함.
  - 취업자 수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크게 감소하고, 계절조정 실업률은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

출처 : KDI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2.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조세환경 변화와 정책 과제

- 4차 산업혁명은 초 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우리 사회·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.
  - 또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e-러닝과 원격진료 등 디지털 플랫폼 기반 비대면(un-tact) 기술의 가치가 새롭게 부각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기존의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임
-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이 디지털화로 전환됨에 따라 기술혁신에 성공한 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임.
  - 직 경제(gig economy)와 공유경제 등 새로운 사업모델의 등장 이면에는 자동화 진전에 따른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도 상존함.
  - 경제와 산업구조의 디지털화라는 근본적인 변화는 정책 환경에도 다양한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기존 전략의 전환과 새로운 전략의 발굴이라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필요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
- 본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여러 환경 변화 가운데 조세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음.
  - 조세환경 변화를 점검하고 우리나라가 현시점에서 추진해야할 정책개선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자 함

출처 : 국회 예산정책처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# 3. 그린뉴딜 성공의 조건 : 탄소인지예산

- 코로나19 경기부양책을 저탄소 투자로 전환하는 그린뉴딜이 화두인 가운데 그린뉴딜의 성공을 위해 탄소인지예산 도입 필요
  - 탄소인지예산이란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지출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수단
  - 기후예산, 녹색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프랑스, 멕시코 등 일부 OECD 국가와 네팔, 방글라데시 등 개도국에서 시도되고 있음
  -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상 최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경제 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그린뉴딜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
- 정부도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2025년까지 73.4조 원을 투자하는 그린뉴딜을 발표
  - 그린뉴딜에 대한 요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과 유사
  - 전 세계적으로 5,200억 달러가 넘는 녹색 부양책이 시행되었으며, 우리나라도 신국가발전전략으로 GDP의 2%를 녹색 분야에 투자하는 녹색성장을 추진
  - 녹색성장 정책은 초기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었으나 녹색성장의 다른 한 축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실패
  - 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정책을 통합하여 관리하고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서 서로 모순된 정책이 실행되고, 목표와 정책수단 사이에 간극이 생겨 예산 배분과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했기 때문

출처 : 경기연구원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## 4. 소방직 국가직화 인건비 지방자치단체 부담 개선

-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.
  - 2020년 4월1일부터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 2,516명이 국가직 전환됨
  - 이는 광역 지자체의 재정력이나 지자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소방인력이나 장비 등 소방안전서비스의 제공역량에 따라 차이가 발행하는 문제
  - 담배개별소비세의 20%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21년까지 45%로 증가
  - 소방안전교부세 재원 45% 중 20%는 이전과 같이 소방안전시설이나 장비확충 재원이고, 나머지 25%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충원 재원으로 활용
  
- 소방직이 국가직이 되어 간부 임명 및 인사권 등은 모두 국가로 이관되는데 반해 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기형적 구조
  - 지방소방예산 중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조달 비중은 1982년 67.1%에 달했으나, 2010년 24.6%까지 낮아지면서 지자체가 투입해야 하는 일반전출금 비중이 평균 68.7%로 증가함
  -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재원 국가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거나 지방세법상 소방재원 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분 지방세의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일반전출금 부담을 감소시켜야 할 것임
  
- 분석결과와 시사점
  - 22년까지 추진 중인 현장부족 인력 충원 대응으로 추가 인건비분에 대해서만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상하는 성격이 강함
  - 따라서, 전체 국가직화 이후 소방인력의 인건비 부담을 계속적으로 자치단체에 지우지 않으려면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것이나, 이번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에는 추가 재원확보에 대한 내용 빠짐.
  - 장기적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의 9%에 달하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부담도 추가재원 확보시 고려되어야 함

출처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5.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제도변화

- 주민참여 확대,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책임성 확보,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 자치분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「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」이 88년 개정 이후 3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
  - 시민의식의 성장과 더불어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를 강화, 지방의회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 의결
  
- 지방의회 관련 주요 내용
  -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, 자치입법·예산 심의·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‘정책지원 전문인력’을 도입
  - 지방의회의 투표결과 및 의정활동, 집행기관의 조직·재무 등 지방자치 정보를 주민에게 선제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의 정보접근성 제고
  - ‘제 식구 감싸기’식의 솜방망이 징계를 예방하고 지방의회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,
  -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 시 의무적으로 의견 수렴
  - 지방의원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,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내역을 공개
  
- 시사점
  -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입법, 예산 등의 분야에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짐.
  -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, 직무, 임용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의회의 자율성 강화 측면에서 볼 때 어울리지 않으므로
  -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구체적인 운용방향을 설정

출처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세계지방자치동향, 2021.1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6.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방안의 탐색적 논의

- 중앙-지방 간 사무와 기능 분리에 따른 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분담의 원칙이 선행되어야 함
  - 과거 정부에서 추진해온 자치분권의 확대에 따른 재정지원정책은 중앙-지방 간 불명확한 사무와 기능으로 인해, 자치단체의 고유사무 처리에 따른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노력이 늘 미흡
  -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복지·교육·소방·경찰의 기능은 중앙-지방 간 재원중립의 원칙에 밀려 주어진 이전재원제도 내에서 소요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끼워맞추고 있음
  - 중앙-지방간 재원분담이 목적이 되어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증진은 수단화되고 있음
  - 소방직의 국가직화에 따른 재원분담 갈등 역시 국민의 안전과 치안을 기본으로 하는 정부역할을 도외시 하는 우려가 있는데, 자치경찰제도에 서 나타날 우려가 큼
  - 특히, 소방직의 국가직화와 국가경찰의 자치경찰화는 중앙-지방 간 재원을 서로 맞바꿀 여지가 존재함
  - 또한, 현행 자치경찰의 사무구분과 집행은 중앙-지방 간 공동영역에 다수 존재해 향후 안전관련 책임이 부각되면, 소방직처럼 국가직화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
- 안정적 재원마련방안은 기존 소방, 교육, 복지의 중앙-지방 간재원분담 체계를 넘어서서 중앙-지방 간 사무 및 기능을 명확히 하고,
  - 이에 기초한 재정지원방안은 재정시뮬레이션 및 제도도입을 위한 외국 사례에 대한 연구 등을 토대로 마련되어야 할 것
  - 시나리오 방안에서 보면, 지방자치교부세의 지원형태에서는 특별 목적의 경찰청의 자치경찰교부금은 자치분권의 방향성에 배치될 여지
  - 보통교부세의 일반재원으로 갈 경우에는 법정교부율의 인상 및 경찰의 특별 목적에 부합성에 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
  - 또한, 교부세 산정 시, 기준재정수요 선정에서 경찰수요의 특수성의 반영과 관련하여 일본의 자치경찰교부세의 산정방식 논의 필수



- 자치경찰제의 자체재원을 통한 운용에 있어, 지방세 인상 (예, 지방소비세) 및 세수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타 기능 (소방, 복지, 교육 등)의 중앙-지방 간 재원분담체계 이후의 7:3 비중의 국세-지방세의 끼워맞추기식 재정운용체계는 지양되어야 할 것
- 자치경찰을 포함하는 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통합한(예, 복지, 교육, 경찰) 재원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. 왜냐하면, 아직까지,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자치단체 재원자주권한은 실현되지 못하였기 때문임

출처 : 한국지방행정연구원(지방자치 이슈와 포럼, 2020.12)

원문은 e-mail에 첨부함

## 7. 지방재정 관련 법령 제·개정 사항

### ○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재갑의원 등 10인)

- 현행법에서는 자경농민이 경작을 목적으로 도로점용, 하천점용 등에 대한 면허의 등록면허세, 귀농인의 직접 경작 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·임야에 대한 취득세 및 농지확대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지에 대한 취득세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지만 모두 2021년 12월 31일 종료 예정
-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, 이상 기후변동 등으로 인하여 농작 분야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어 이러한 지방세특례가 당분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
- 이에 농업인 등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관련 지방세 특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 경작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

### ○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식의의원 등 23인)

- 그간 지방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한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가가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아동·보육 관련 복지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고,
- 이에 필요한 세수를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여, 최근 확대되고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
- 이에 현행법상 지방소비세율을 21%에서 31%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고,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아동·보육 관련 복지사업 비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
출처 : 행정안전위원회(입법예고기간 2021.02.19. ~ 2021.2.28.)